

- ※ 코로나 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집체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제작된 자료입니다.
- ※ 본 내용은 중요한 자료이므로 실업급여가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워크넷(www.work.go.kr)으로 구직신청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니 반드시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설명회 자체학습자료

1. 2회차, 3회차 실업급여는 ▲[출석형] 경우 단기교육특강 자율학습으로 대체되며 서약서 제출하시고 자료를 받아가시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형] 경우 구직활동 1회를 하시고 인터넷(www.ei.go.kr)으로 전송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회차는 신청 2주 후 구직급여 교육 참여하시면 지급되고, 4회차는 ▲[출석형] ▲[인터넷형] 모두 구직활동 1회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시거나 출석하여 제출하셔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2018.5.1.부터 실업인정방식이 변경되어 구직활동 내용 확인(구직활동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됩니다. 만일, 모니터링 결과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또는 「재취업 촉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제도

① [개념]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 기간 중의 생계안정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 실업신고일부터 1차 실업인정 시까지는 별도의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앞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

예) 2020/02/20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가 2020/1/20부터 2020/02/19 사이 일한 날수가 10일(포함) 이상일 경우 2020/02/20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신청일(제외)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취득 중인 사람이 고용단절 없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료 납부)

③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액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최근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 60,120원('19.1.1 이후 퇴사한 경우)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④ [실업급여 지급 일수] ←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수급금액 모의계산 가능
<'19.1.1.~'19.9.30. 이직자 적용>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19.10.1. 이후 이직자 적용>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절차

※ 인터넷형 실업인정이 원칙입니다.

구분	수급자설명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후
기간	신청일	2주	4주	4주	4주	4주	4주	4주	2주
구직활동	없음	없음	1건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지급일수	-	8일분	28일분	28일분	28일분	28일분	28일분	28일분	14일분
신청방법	-	출석	인터넷 또는 센터출석		출석	인터넷 또는 출석			

○ 실업인정일 60세 이상 (생년기준 1960년생), 중증(복지부) 장애인의 경우 4주 1건 이상 구직활동

○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 오후 5시 전 지급

○ 구직활동은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해야 함.

※ 구직활동시 워크넷을 이용하는 경우 입사지원 횟수의 제한이 있으니 신중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소정급여일수 120일인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인 자 총 5회)

3 실업인정 방식

1. 출석형 실업인정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인해 한시적) 실업인정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유무를 신고하고 구직활동내역을 제출 하거나 자체 학습서약서 제출 후 자체 학습을 통한 실업인정.

2. 인터넷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공인인증서 접속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실업인정일 오전에 전송

인터넷 대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실업인정일 오전중(00:00~정오12:00) 전송,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공인인증서 필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실업인정 절차 : 신청인 정보 확인 → 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사항 입력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사항 확인 →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결과 확인 및 전송(결과 확인)

※ 실업인정 당일 오전중 (00:00~정오12:00) 전송요함(17시 이후 전송불가)

☞ STEP 1 우선,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체크를 합니다.

☞ STEP 2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 및 근로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정확히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 STEP 3 가장 중요한 단계로 구직활동 내역 및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훈련수강, 취업특강 등)도 입력합니다. 구직활동 입력 시 빨간 별의 내용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첨부 구비서류는 첨부할 수 있는 확장자 파일에 맞추어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EP 4 다음 출석일에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 후 하단부에 있는 저장란을 클릭합니다. 다음단계인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만 가능합니다. 다음단계 클릭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 전송완료 확인하시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4 실업인정시 주요내용

회차	주요내용
오늘	• 자체 학습자료 수령 →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 • 워크넷 구직신청
1차 (2주후)	• 취업희망카드 수령 → • 실업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실업인정 방식 출석형 또는 인터넷 선택 & 계좌 등록) → 귀가(취업희망카드 자체 학습) ※창업 준비시,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2차 (4주후)	• [출석형 실업인정] 2차 실업인정일 자체 학습서약서 작성 또는 구직활동 내역 1건 이상 제출 → 자체 학습자료 수령, 실업인정신청서 제출(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유무) → • 귀가 • [인터넷형 실업인정] 2차 실업인정일 오전중(0:00~정오12:00)으로 인터넷 전송(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유무, 1건 이상 구직활동 내역 작성)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 부정수급 조사의뢰 → • 기타 상담 등
3차 (4주후)	• [출석형 실업인정] 3차 실업인정일 자체 학습서약서 작성 또는 구직활동 내역 1건 이상 제출 → 자체 학습자료 수령, 실업인정신청서 제출(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유무) → • 귀가 • [인터넷형 실업인정] 3차 실업인정일 오전중(0:00~정오12:00)으로 인터넷 전송(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유무, 1건 이상 구직활동 내역 작성)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 부정수급 조사의뢰 → • 기타 상담 등
4차 전원출석 (4주후)	★ 전원 출석하여(1층 교육장, 오후 1시) 1건 이상 구직활동 제출 ★ 90일 이하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에 종료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 부정수급 조사의뢰 → • 기타 상담 등
5차 이후	★ 5차 실업인정부터 4주마다 2건 이상 ※ 실업인정일 60세 이상 (생년기준), 3급 이상(복지부) 장애인의 경우 4주 1건 이상 구직활동 • [출석형 실업인정] 5차 실업인정일 이후 구직활동 내역을 가지고 지정된 창구로 출석 • [인터넷형 실업인정] 5차 이후 실업인정일 오전중(0:00~정오12:00)으로 전송

5 재취업활동 입증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상이 아닌 구직활동비이므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상태에서 ①구직활동 ②자영업준비 ③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④직업 훈련 수강 ⑤봉사활동 등 기타 활동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	<p>① 직접 방문 ⇨ 면접증빙서류(구인광고필수), 면접확인서, 인사담당자 명함 제출</p> <p>② 우편 ⇨ 모집공고 + 등기영수증 제출, ③ 팩스 ⇨ 모집공고 + 팩스발송영수증 제출</p> <p>④ 인터넷 이용 시 ⇨ 취업사이트 등의 모집요강 화면과 온라인 입사지원 후 취업증명원을 출력하거나, 이메일(E-MAIL)을 이용하여 지원한 때에는 보낸 날짜와 보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낸 편지함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p> <p>※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내역만 인정, 입사지원제의, 채용정보검색 인정불가</p> <p>※ 잡코리아, 인쿠르트, 사람인 등 ⇨ 취업활동증명서 출력(모집공고 필수)</p> <p>※ 개인메일로 이력서 접수 시 - 모집공고 + 보낸편지함 목록 출력</p> <p>※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력서 접수 시 - 모집공고 + 입사지원 확인 화면 캡처 출력</p>
www.hrd.go.kr (직업훈련 상담 ☎ 7층)	<p>⇨ 훈련 수강증명서 발급</p> <p>○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p> <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p> <p>※ 재취업 훈련시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30시간 이상 수강시 구직활동 2건, 15시간 이상 30시간미만시 1건 인정</p>

<p>자영업 준비활동</p>	<p>⇨ 점포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 활동, 프랜차이즈 내용 확인, 창업을 위한 서류 등에 관한 자료 제출(창업 준비과정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p> <p>⇨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관련자료 제출(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p> <p>○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개인자유소득업 포함)을 한 경우</p> <p>○ 사업개시 : 사업자등록(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취임등기) 이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요함</p> <p>○ 자영업개시로 인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려면 (★중요)</p> <p>-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고 1년이상 사업 영위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p> <p>※자영업 예시 :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촉·등록 등에 의한 자유소득업자, 프리랜서, 용역계약, 지입차주, 자유계약직 학원강사,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인, 학습지교사 등 자유소득직업도 자영업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담당 창구에서 사전상담 및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p>
<p>취업지원 서비스 참여</p>	<p>(1)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참여(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p> <p>(2)기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 교육, 프로그램 이수, 상담자 확인서류 제출</p> <p>○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 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p> <p>○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p>
<p>기타 취업활동</p>	<p>⇨ 활동 증명 또는 활동 확인 서류</p> <p>○ 사회봉사활동, 선원 구직등록,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 제공</p> <p>○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한 횟수 및 기준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p>

6 실업인정 불인정 사례 ★ 매우 중요

<p>※ 실업인정 불인정 되어 구직급여 소멸 부지급 사례</p> <p>○ 구인업체가 아닌 사업장에 구직활동 하는 경우</p> <p>○ 정당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구직활동 횟수 부족</p> <p>- ★동일 사업장 반복 구직활동,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벗어난 날에 구직활동 등</p> <p>○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 구인의사가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받아오는 경우</p> <p>- 사업체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p> <p>- 사업장에서 면접요청 시 이유 없이 거부, 형식적으로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p> <p>- 구직활동 제출내역이 사실이 아닌 경우(퇴직자, 사망자, 면접사실 없는 경우 등)</p> <p>○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p> <p>○ 사업 등을 하는 친척, 친지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p>
--

7 연장급여

① 종류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구분	대상	연장일수	급여수준
훈련	•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훈련기간 (최대 2년)	구직급여일액의 100%
개별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60일 이내	구직급여일액의 70%
특별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는 수급자격자	60일 이내	구직급여일액의 70%

2 지급 요건

훈련 연장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④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개별 연장	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②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학업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③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평균임금 74,000원, 재산세합계액 160,000원,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하) 이하인 자
특별 연장	연속되는 3개월간 실업률 등 피보험자의 실업상황악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일정률을 초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결정

※ 대상자 선정, 적용제외 요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이상 남아 있을 때 또는 최소한 수급종료일 1개월 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의 행위가 있어야 함

8 상병급여

- 1 [상병급여의 청구 기간]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2 [지급 요건]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적용제외 요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9 취업촉진 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기 및 방법(처리기한 14일)>

- 청구시기 :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 청구
- 청구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ei.go.kr)으로 첨부서류 스캔) 청구
(우01762,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 4층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 청구서류(서울북부고용센터→서식자료실→'조기'로 검색 후 한글파일 출력하여 사용)
 - 취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주 확인서,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위촉증, 재직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2개월간 영업을 입증하는 서류(카드전표, 과세자료, 세금계산서, 보수명세서 등)

< 지급 요건 >

- ①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개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일 경우
- ②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계속 사업을 영위
- ③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 ④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을 것
- 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⑥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후 1회 이상의 자영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함)
(자영업 예시 :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촉·등록 등에 의한 자유소득업자, 프리랜서, 용역계약, 지입차주, 자유계약직 학원강사 등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경우)
- ⑦ 일용근로자의 경우 단위기간(한 달)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내역이 있을 것
- ⑧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조기 재취업한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지급 금액> 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만료일까지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수 * 1/2 * 구직급여 일액

< 유의 사항 > 수습·연수의 기간도 주15시간, 월60시간이상이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대상이므로 근로 시작일에 맞추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함.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12개월 이상 안정적인 취업으로 인정이 안 됨.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사례(중요)

- 재취업(2014.2.1.) 후 12개월 이내에 이직한 후 공백기간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2014.10.1.)하면 2014.10.1.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이 되지 않아 부지급(예시 : 용역 현장, 하도급사 등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 이직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나, 이직한 회사와 재취업한 회사의 관계가 채권·채무가 승계되어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결과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사업주에 해당되어 부지급(예시 : 같은 본사에 다른 지사 재취업, 사업의 양도·양수 등)

② **광역구직활동비(교통비, 숙박비)** :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③ **이주비(이사비용)** :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종전 거주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경우

④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1일당 5천원 지급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① 부정수급이란?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 ※조사시한 3년
- 취업·소득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취업유무, 취득일·상실일 허위신고, 구직활동 허위신고 등

② 부정행위 유형[=반드시 신고]

- ① 근로제공·부업·시간제 아르바이트·일용근로·공공근로한 사실이나 자영업, 보험설계사·채권추심인 등의 자유직업활동 사실을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
-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허위신고
- ③ 재취업 활동 허위신고 (구인업체가 아닌 사업장에서 단순 탐문만을 하는 경우는 허위 구직)
- ④ 사업자등록증 소지 사실 및 자유직업 등록(위촉)중임(등기이사 등)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하는 경우
- ⑤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직일,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⑥ 다른 사람의 자격의 이용 또는 도용, 위장고용, 위장해고 등
- ⑦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취직 또는 자영업 신고를 하거나 취업이 예정된 사실을 숨기는 경우
- ⑧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산재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수급자격신청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 위반 시 처분

- 지급된 실업급여 회수(부정행위일이 포함된 기간 전액), 중지처분(남은 실업급여 소멸), 부정수급 기간만큼 추가징수, 형사고발

④ 취업으로 보는 범위 (신고사항)

- * 사업주와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 실업급여 수급도중 일용근로자(공공근로 등 포함)로 일한 경우
- *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우
- *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자유직업에 종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의 불인정, 부정수급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경유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우중요, 꼭 읽어 보세요

가. 실업급여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즉시 신고(재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취업시) 실업인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취업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담당창구에 제출(2개월 초과 시 부지급되니 주의요함)

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소멸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의 변경 가능(사전 담당자와 상담),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자

-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각종 국가시험 · 검정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동거친족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다. 취업사실 및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

- 근로시간, 임금액과 관계 없이 1시간, 1일이라도 반드시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
- 상용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공사현장 일당직, 자유직업도 취업에 해당

라. 수급 중에 취업하였다가 재 실업하면? ⇒ 퇴사 후 7일 이내 반드시 방문(단, 수급기간이 남았을 경우에 한함)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 실업급여, 직업훈련 희망자는 반드시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하셔야 합니다 】

1 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Step 1 www.work.go.kr 에 접속 → 구직 →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 회원가입** 클릭

Step 2  선택 후 개인회원 약관을 읽으신 후  클릭

Step 3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 버튼 클릭



성명 실명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저장

※ 회원가입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이메일,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가입절차를 따릅니다.

Step 4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자세히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2 구직등록하기

Step 1 개인회원 로그인 후 내정보관리 → 구직신청 관리 → **[새 이력서 등록]** 클릭



구직 채용정보 근무지역별 | 직종별 취업도움내 내정보관리 **구직신청** 청년채용 고령자예유 구인 직업·진로

내정보관리

- 구직신청 관리
 - 내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새 이력서 등록
 - 구직신청 이력
 - 동영상 이력서**
 - 학점 및 대학점수 변환
- 업사지원 관리
 - 알선/업사지원 내역
 - 구직활동 내역

새 이력서 등록

이력서는 최대 5개 까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이력서 등록 유형을 선택하신 후, 등록해주세요.

이력서 단계별 등록 

이력, 학력 등 해당 영역별로 나누어진 항목들을 단계별로 확인 후 등록하세요.

이력서 간편 등록 

이력서에 필요한 필수 항목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선택하여 등록하세요.

Step 2 **이력서 간편 등록**  을 이용하시면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프로세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등록 후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1 개인정보 및 학력/경력사항
- 2 희망취업사항
- 3 자기소개서 및 키워드
- 4 이력서작성완료 / 구직신청

※ 이력서 작성완료 후  버튼 클릭

Step 3 고용센터에서 인증을 위해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잘 받아주세요.

고용센터의 인증이 완료되면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이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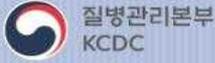
※ 워크넷으로 이메일 입사지원을 하시면 실업인정 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센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 2020.1.29